

##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(말소)된 식품접객업 영업자에 대하여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「식품위생법」 시행규칙 제 47조의2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후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23일

# 서대문구청장

1. 공고기간 : 2023. 3. 23. ~ 2023. 4. 17.
2.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
3. 공고내역

업종	업소명	영업자	소재지	법적근거	예정처분
식품자동판매기 영업 (2016- 0066328)	세븐일레븐 명지대점B	정** ((주)바이 더웨이)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10길 59, 1층 (남가좌동)	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	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

4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: 영업소 무단폐업(사업자 등록 폐업)

5. 법적근거 :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7항

6. 의견제출

가. 기관명 : 서대문구청 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(연희동))

나. 부서명 및 담당자 : 보건위생과 박재형

다. 연락처 : 전화번호 330-8905 / FAX 330-8987

라. 유의사항

- 1)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업신고사항이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- 2)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(서대문구청) 또는 재결청(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)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7. 본처분에 대한 문의 : 서대문구보건소 식품위생팀 박재형(02-330-8905)